

과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변경 행정예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과 주 시 장

1.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시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시간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 시간을 변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마.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바.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2023년 7월)

3. 행정예고기간: 2026. 5. 7. ~ 2026. 6. 1. (25일간)

4. 시행일 : 2026. 6. 2.(화)

5.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6. 주요 변경 사항

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보도(인도)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인도) 주차 - 위반 기준: 1분 - 운영 시간: 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인도) 주차 - 위반 기준: 1분 - 운영 시간: 07:00~21:00

단, 보도(인도)를 제외한 구간에 대한 단속 기준은 현행 유지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시~20시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24시간)

7.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변경 사항 적용(적색표시))

가. 신고대상

구 분	주민신고 가능 요건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버스 정류소 - 정류소 시설 외곽(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선 중 어느 하나) 기준 좌우 10m 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또는 적색연석 표시구간 ·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시설물은 비해당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의 범위 · 정지선이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보도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사유지·대지·주차장에 주차할 시 보도에 걸쳐 있는 차량이 인도의 2분의1 이상 또는 차체의 2분의1 이상 침범 시 과태료 부과	07:00~21:00		
기타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대	평일 09:00~21:00 토·일·공휴일 09:00~18:00	5분
	-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지대, 터널, 다리위 등		10분

※ 6대 구역은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 미적용

나.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다. 신고요건

- 1)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접수한 신고건만 부과
* 동영상, 블랙박스 등 기타 전자기기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 제외
* 사이드미러, 거울 등을 이용한 간접 촬영된 사진 제외.
- 2) 모든 사진이 위반장소, 위반사항, 위반일시,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함
- 3)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동일 차량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신고 대상에 따라 1분, 5분, 10분 간격으로 2장 촬영 신고
- 4) 모든 사진이 단속시간 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제외시간 포함시 부과 불가
- 5) 모든 사진이 단속시간 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신고대상에 따른 1분, 5분, 10분을 초과하여 주정차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1차 촬영 시각 또는 2차 촬영 시각이 단속유예 시간 내에 포함되면 부과 불가

라. 과태료 부과: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 (10930) 파주시 시청로 51(시청별관)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940-4789)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 2026. 6. 1.(월) 18:00까지

마. 문의사항 : 파주시청 주차관리과 주차질서팀(031-940-596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